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9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이만희·정점식·임이자

안병길 · 송석준 · 김태흠

윤두현 • 권성동 • 조명희

엄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은 "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", "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", "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", "수상 레저사업"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최초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이 제정('99년)될 당시와 달리 현재수상레저는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는 등 수상레저 인프라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고,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·변종레저기구 등 새로운 레저환경의 변화로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이라는 단일법으로는 탄력적인 대응 및 수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 을 반영하여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수상레저기구의 정의 정리(안 제2조)

수상레저기구를 동력·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구분하고, 각각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함.

나.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(안 제4조)

수상레저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안전관리 및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해양경찰청장이 5년 주기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하고,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시·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.

다. 조종면허증 대여 • 알선 행위 금지(안 제16조)

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전문자격증 대여·알선행위 제재 권고사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의 대여·알선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라.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(안 제22조)

국민 안전을 위해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기상특보, 저시정 시 레저활동 금지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.

마. 전산시스템 구축・운영 근거 마련(안 제36조)

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해 수상레저 안전 및 효율적인 기구 관리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.

- 바.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·운영 및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 치 근거 마련(안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제55조)
 - 1)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시 소유자의 보험가입정보만 시스템 화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·운영 근거를 마련함.
 - 2)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보험 미가입자의 신속한 적발과 더불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 련함.
 - 3)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보험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전산망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 근거 를 마련함.

사. 양벌규정 근거 마련(안 제63조)

행위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게 될 법인 또는 사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법인 또는 사용주 등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9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

수상레저안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수상레저안전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 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"수상레저활동"이란 수상(水上)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・오락・체육・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.
- 2. "래프팅"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 다.
- 3. "수상레저기구"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분된다.
- 4. "동력수상레저기구"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

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5. "무동력수상레저기구"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외의 수상레저기구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수상"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.
- 7. "해수면"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.
- 8. "내수면"이란 하천, 댐, 호수, 늪, 저수지,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 된 담수나 기수(汽水)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배제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에 따른 유·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 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
 - 2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
 - 3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 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5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 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.
- 제4조(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(이 하 "기본계획"이라 하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국내외 수상레저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
- 2. 수상레저 관련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
- 3.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
- 4.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민·관 협업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수상레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 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의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2장 조종면허

- 제5조(조종면허)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 허(이하 "조종면허"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일반조종면허 : 제1급 조종면허, 제2급 조종면허
- 2. 요트조종면허
- 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급 조종면허를 받은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.
- ④ 조종면허의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)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·조종기간 및 지역,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다.
 - 1. 14세 미만인 사람. 다만,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 - 2. 정신질환자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- 3.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

- · 대마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 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4.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(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)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면허시험)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(이하 "면허시험"이라 한다)에 합격하여야 한다.
 - ②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・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 -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 - ④ 면허시험의 과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(면허시험의 면제)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시험(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한다) 과목의 전부를 면제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 로 등록된 사람
 -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을 것(법령에 따라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 - 나. 해당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 였을 것
 - 3.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
 - 4. 「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해양소년 단연맹 또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교육·훈련업무에 1년 이 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 - 5. 해양경찰청장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(이하 "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
 - 6.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

- 으로 변경하여 응시하려는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운영하여야 하고, 인적 기준 및 장비 ·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과 인적 기준, 장비·시설 기준 등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 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

- 3.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- 4.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-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 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시험 시행일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- 제12조(조종면허증의 갱신 등) ①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이하 "면허증"이라 한다) 갱신 기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.
 - 1. 최초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
 - 2. 제1호 외의 면허증 갱신 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
 -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이

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. 다만,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조종면 허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.

- 제13조(수상안전교육)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,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(이하 "안전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 개월로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 - 1.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
 - 2.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(이하 "안전교육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적 기준, 장비·시설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

- 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
- 3.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-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면허증 발급)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1.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
 - 2. 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
 - ② 조종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한다.
 - ③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.
 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면허증 휴대 등 의무)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.
- ③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7조(조종면허의 취소·정지) ①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종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조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
 - 2.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
 - 3.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
 - 4.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5.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
 - 6.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7.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

- 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- 8.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
- 9.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
- 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 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면허시험 업무의 대행)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(이하 "시험대행기관"이라 한다)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시험대행기관의 장,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(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)
 - 3.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 - 4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

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③ 시험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해양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면허시험 대행업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,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·취소 및 정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종사자 교육)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, 안전교육 위탁기관,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·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·대상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
제3장 안전준수의무

- 제20조(안전장비의 착용)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운항규칙 등의 준수)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방법, 기구의 속도, 「수상레저기구의 등

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제22조(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)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 - 1. 태풍·풍랑·해일·호우·대설·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 보가 발효된 경우
 - 2.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.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
- 제23조(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)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 를 하거나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출항・입항 신고 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(이하 "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"라 한다)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는 아니 된다. 다만,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, 선단의 구성 등 해

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24조(사고의 신고 등)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,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·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
 - 2. 충돌, 좌초 또는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, 사고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후에 사고 장소가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 경찰서장에게, 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, 서울특별시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5조(무면허조종의 금지)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(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)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

-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1급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2. 조종면허를 가진 사람과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제26조(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)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주취 중 조종 금지)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(「해사안전법」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

- 다.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한다.
- 1. 경찰공무원
- 2. 시・군・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(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- 제28조(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) 누구든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의 영향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 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9조(정원 초과 금지)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4장 안전관리

- 제30조(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)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(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31조(시정명령)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시정명령은 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1. 수상레저기구의 탑승(수상레저기구에 의하여 밀리거나 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인원의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
 - 2.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
 - 3. 수상레저기구의 개선 및 교체
- 제32조(일시정지·확인 등) ① 관계 공무원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그 수상레 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33조(관계 행정기관의 협조) ①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 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 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34조(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)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·개발,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 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-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
- 2.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
- 3. 조종면허시험, 수상레저기구 등록 · 안전검사 · 안전점검의 대행
- 4.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, 수 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·교재의 개발
- 5.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
- 6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 원을 할 수 있다.
- ⑤ 협회의 정관·업무·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5조(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수상레저활 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 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례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·도지사에게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을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36조(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
 -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종 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5장 수상레저사업

제37조(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)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(이하 "수상레저사업"이라 한다)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 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렁

-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- 1.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: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
- 2.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: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
- 3.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: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 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 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 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·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 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8조(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)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,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

- 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- 2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4. 제4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(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제40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 다.
 - 1.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 - 2.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 - 3. 법인인 수상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
- 제41조(휴업 등의 신고)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 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.
- 제42조(이용요금)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·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43조(안전점검)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상레 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 -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 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

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, 대상 항목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(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) ①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
 - 2. 영업구역의 기상·수상 상태의 확인
 - 3.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· 경찰관서·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
 - 4.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
 - 5.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
 - 6. 비상구조선(수상레저사업장과 그 영업구역의 순시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의 배치
 - ②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14세 미만인 사람(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),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 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

- 2.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
- 3.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·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 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
- 4.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
- 5. 제26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 행위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·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·운송하는 행위
- 7.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안 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
- 8. 비상구조선을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
-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, 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구조선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5조(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)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 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,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46조(영업의 제한 등)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체가

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명할 수 있다.

- 1. 기상 · 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
- 2.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
- 3. 유류·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·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 이 오염된 경우
- 4.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
- 5.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.
- 제47조(자료 제출 등)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상 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48조(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)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

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 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- 2.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- 3.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
- 4.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
- 5. 수상레저사업자가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9조, 제10조, 제13조, 제15조,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 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
- 6.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7.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, 제49조제2항,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

제6장 보험

제49조(보험등의 가입)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)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(이하 "보험등"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-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50조(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보 제공)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51조(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) ①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·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(이하 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 또는 「보험업법」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(이하 "보험협회등"이라 한다)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·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52조(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·운영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 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이 관리 ·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보

험등 가입관리전산망(이하 "가입관리전산망"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3조(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)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
 - 2.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
 - 3.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등록 대상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- 제54조(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)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(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그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・검사 신청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.
 - 1. 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된 수상레저기구를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, 제9조,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 록·검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
 - 2.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제37조,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5조(권한의 위탁) 해양경찰청장은 제52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장 보칙

제56조(과징금)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,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1.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: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
- 2. 안전교육 위탁기관: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
- 3. 시험대행기관: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
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,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, 안전교육 위탁기관,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・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57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.
 - 1.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
 - 2.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
 - 3.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, 재발급,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
 - 4.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· 변경등록 및 휴업

- •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 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.
- 1.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
- 2.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, 시험대행기관의 수입으 로 한다.
- ⑤ 제1항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 및 안전교육에 응시하려고 납부한 수수료 반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8조(청문)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 - 1.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, 업무정 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
 - 2.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,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

- 3.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, 업무정지 또는 제 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
-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 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59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6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, 안전교육 위탁기관, 시험대행기관,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 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8장 벌칙

- 제6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 선한 자
 - 2.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
 - 3.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

조종한 사람

- 4.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
- 5.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
- 6.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
- 7.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
- 제6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· 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 업자
 - 2.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
 - 3. 제46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
- 제6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 및 제6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

- 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
 - 2.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
 - 3.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조종한 사람
 - 4.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 동을 한 사람
 - 5.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,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
 - 6.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
 - 7.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
 - 8.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
 - 9.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

- 10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대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

11.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

- 2.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
- 3.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
- 4.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 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
- 5.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
- 6.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 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
- 7.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
- 8.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
- 9.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·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사람
- 10.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, 내수면의 경우

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부과・징수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, 제60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등 및 보험 협회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 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.
- 제3조(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5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4조(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5조(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제13조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- 제6조(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제7조(수상레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은 이 법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9조(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.
- 제10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11조(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.
- 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28조의5제2항제6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39조"를 "「수상레저 안전법」제37조"로 한다.

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7호를 삭제한다.

③ 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6호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7호"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7호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8호"로 한다.

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6호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7호"로 한다.

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45조"를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43조"로 한다.

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"을 "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1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에서 종전의 「수상레저안전법」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「수상레저안전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